

(주)머스트투자자문 신용정보 활용체제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가. 이용목적

- 1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2) 마케팅 활용
- 3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나. 신용정보의 종류

- 1) 식별정보
개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, 직업, 국적 등
- 2) 투자자정보
투자목적, 투자경험, 소득 등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기재된 정보
- 3) 금융거래정보
거래증권사, 계좌번호,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등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제공대상자

- 1) 투자일임계약 이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업체 : 거래증권회사 등
- 2) 대외기관 보고 및 업무협조에 관련된 기관 : 국회, 행정부처,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등
- 3) 통계자료 작성 또는 사무수탁기관 : 한국예탁결제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1) 투자일임계약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
- 2) 대외기관 보고 및 업무협조 등 법령상의 의무이행
- 3)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, 상품 및 서비스 안내, 사은행상 및 판촉행사 등
- 4) 우편물 배송 등 업무위탁
- 5)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1) 식별정보
- 2) 투자자정보
- 3) 금융거래정보
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가. 보유 및 이용기간: 거래 종료 후 5년(단, 금융사고조사, 분쟁해결, 자본시장법 등 법령상 의 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)

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: 당사 문서관리규정에 따름

4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가. 사무수탁업무: 한국예탁결제원

나. 우편물·택배 배송업무: 업무상 당사가 선정하는 자
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가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라. 개인(신용)정보 처리에 대한 고객 권리·안내문

- 당사 홈페이지(www.mustinvestment.com) 공지사항 참조

6.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
-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: 경영기획팀장 박상은 (02-578-5080)

(주)머스트투자자문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

1.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

고객의 신용정보는 투자자가 동의한 목적만으로 사용되며, 제휴·위탁업체 등에 대한 제공 및 상품·서비스 안내 등에 대한 수집·이용·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·위탁서비스, 상품·서비스 안내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2. 투자자 권리의 내용

투자자에게는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“신용정보업감독규정”과 “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”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

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mustinvestment.com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①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(법 제35조)

-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(법 제37조)

▷ 제휴·위탁업체 등에 대한 제공 동의 철회권

- 고객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개인 신용도 평가 등 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동의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유무선 통신,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.
- 다만,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외에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법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.
 - ※ 단,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▷ 연락중지청구권

- 고객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
 - ※ 신청방법 : 당사 내방 또는 유선신청 (TEL : 02-578-5080)
 - ※ 신청자 제한: 신청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함(배우자 등 가족, 제3자 신청금지)
 - ※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, 3개월 이내에는 동의에 대한 철회 불가(마케팅은 즉시 신청가능)